



원주흥업 B-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 접수지원 / 공고일 : 2024.03.15(금)]

■ 공급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52-25

■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287세대 중 예비입주자 35세대

■ 시 행 사 : ㈜NH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원주흥업 B-1블록은 주택도시금융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제16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제1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 03. 15.(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104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STARCLASS NH를 사용할 예정이며, 임대기간(10년) 동안 변경 불가함을 숙지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입주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공가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공동인증서를 신청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본인의 인증서를 휴대폰에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모바일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15)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나, 1세대 2인 이상 청약·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결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자는 전산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되어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주요일정 안내

| 구분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문의처 |
|----|--|------------------------------|---|---|--|
| 일시 | 2024. 04. 02(화)~04. 03(수) 10:00 ~ 17:00 | 2024. 04. 12(금) 10:00시 이후 | 2024. 04. 15(월) ~ 04. 23(화) 10:00 ~ 17:00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택소유여부 검색 후 적격자에 한해 예비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안내 예정 | LH 마이홈 : 1600-1004 LH 콜센터 : 1670-0003 |
| 장소 | 온라인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현장 : 원주권주거복지지사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26465)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공급 담당자 앞 * 신청단지 및 접수번호 표기 필수 | | |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지정된 기일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이 취소(삭제) 처리됨.

※ 현장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본인의 인증서(공공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하나)를 휴대폰에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모바일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
| 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 분양전환가액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액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 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원주흥업 B-1블록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리츠) 287세대 중 예비입주자 35세대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 | |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기존 예비자 | 공가호수 | 금회 모집 호수 | 최초입주 |
|-----|-----------|-------|--------|-------------|---------|-----------|---------|-----------|--------------|-------|--------|------|----------|------------|
| | | | | 공급면적 | | 그 밖의 공용면적 | | 계약 면적 (계) | | | | | | |
| |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 | | | | |
| 합 계 | | | | | | | | | 287 | 50 | 2 | 35 | | |
| B-1 | 074.8200A | 74A | 확장 | 74.82 | 24.1038 | 5.5624 | 28.0676 | 132.5538 | 55.7771 | 94 | 2 | - | 10 | '21.10. 08 |
| | 074.6400B | 74B | 확장 | 74.64 | 24.0458 | 5.5490 | 28.0001 | 132.2349 | 55.6429 | 94 | 23 | 1 | 10 | |
| | 074.9200C | 74C | 확장 | 74.92 | 24.1360 | 5.5698 | 28.1051 | 132.7309 | 55.8516 | 25 | 6 | - | 5 | |
| | 084.8300A | 84A | 확장 | 84.83 | 27.3285 | 6.3066 | 31.8227 | 150.2878 | 63.2394 | 74 | 19 | 1 | 10 | |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무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 별로 변경 불가)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단지·동일유형·동일면적(소숫점이하 절사)의 주택형으로 신청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걸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모집에 참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사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만을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인터넷 공고시 첨부된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 | 월임대료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전환시 임대조건 | |
|----------|----------|-----|------------|------------|-------------------|---------|---------------|------------|---------|
| |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 보증금 | 월임대료 |
| 원주흥업 B-1 | 74.8200A | 74A | 40,285,000 | 7,600,000 | 32,685,000 | 359,460 | (+)43,000,000 | 83,285,000 | 144,460 |
| | | | | | | | (-)29,000,000 | 11,285,000 | 444,040 |
| | 74.6400B | 74B | 40,285,000 | 7,600,000 | 32,685,000 | 359,460 | (+)43,000,000 | 83,285,000 | 144,460 |
| | | | | | | | (-)29,000,000 | 11,285,000 | 444,040 |
| | 74.9200C | 74C | 40,285,000 | 7,600,000 | 32,685,000 | 359,460 | (+)43,000,000 | 83,285,000 | 144,460 |
| | | | | | | | (-)29,000,000 | 11,285,000 | 444,040 |
| | 84.8300A | 84A | 50,576,000 | 9,600,000 | 40,976,000 | 375,180 | (+)45,000,000 | 95,576,000 | 150,180 |
| | | | | | | | (-)38,000,000 | 12,576,000 | 486,01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원]

|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원주 흥업 B-1 | 74.8200A | 74A | 151,890,616 | 26,546,264 | 125,344,352 |
| | 74.6400B | 74B | 153,661,299 | 26,482,394 | 127,178,905 |
| | 74.9200C | 74C | 154,029,700 | 26,581,722 | 127,447,978 |
| | 84.8300A | 84A | 171,530,775 | 30,097,832 | 141,432,943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85㎡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용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할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II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15)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솔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솔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무관하나, **1세대 2인 이상 청약·1인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됨**
-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걸려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 :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2024.04.15~04.23)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제외(삭제)됩니다.(※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 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일

- 가. 주택의 경우(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나. 분양권 등의 경우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III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등 안내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문의처 |
|----|--|------------------------------|---|---|--|
| 일시 | 2024. 04. 02(화)~04. 03(수) 10:00 ~ 17:00 | 2024. 04. 12(금) 10:00시 이후 | 2024. 04. 15(월) ~ 04. 23(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4.23일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 | 주택소유여부 검색 후 적격자에 한해 예비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안내 예정 | LH 마이홈 : 1600-1004 LH 콜센터 : 1670-0003 |
| 장소 | 온라인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현장 : 원주권주거복지지사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26465)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공급 담당자 앞 * 신청단지 및 접수번호 표기 필수 | | |

- **청약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공동인증서를 신청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본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하나)를 휴대폰에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모바일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24.04.12(금)에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예비 순번에 따라 동호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되며, 추첨된 동호는 변경 불가합니다.
- **향후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를** 드리며,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입니다.

신청방법(인터넷PC·모바일 신청, 현장접수 지원)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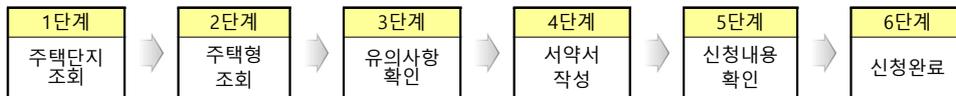
•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신청완료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거주지, 무주택기간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서류제출대상자)일 10시 이후에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 청약 → 『당첨/낙찰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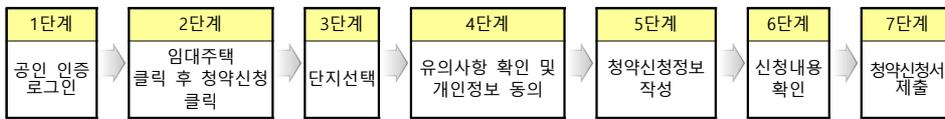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청약 → 고객센터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신청 한 신청형태는 추후 다른 주택형태로 변경 불가)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걸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공급신청 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15(금)]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체크필수 :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안내를 받았습니니다 <input type="checkbox"/> 이해하였습니다에 체크필수 ※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상세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 반드시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본인 준비 양식첨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상세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분리배우자) | 행정복지센터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4.04.15(월)~04.23(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대리인 서류제출시 추가 구비서류**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때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양식 첨부),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유의사항 안내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15)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본인의 신청자격(지역거주,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와 세대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단, 1세대 1인만 공급신청가능)
-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계약, 1인 중복계약, 부부 각각 계약하여 중복 계약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해제)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걸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자는 전산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시 통지

-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입력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1670-0003)로 본인의 연락처를 통보(전화번호변경은 전화통보, 주소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플러스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으며, 변경된 주소 등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 변경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할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단,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위치 안내



- 문의전화 : ☎ 1600-1004 (LH 마이홈)
☎ 1670-0003 (LH 콜센터)

■ 위치안내 :

-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원예농협 하나로마트(혁신도시시점) 3층, (3층~5층 주차가능)

■ 교통편

- * 버스 이용: 6, 7, 13, 16, 100, 100-2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차(370m, 6분 소요)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용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원주흥업 B-1블록 : 2021.03.25]를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검색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 개시일(단지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력) → 상태(접수마감) → 검색 클릭
- 본 입주자 모집안내에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또는 공사 대표전화 (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2024. 03. 15

시 행 사 :  (주)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